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2023.7.12.(수) 16:00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2 층 중 회의실]

- 2023년 7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자료



장안구 파장동

목 차

① 동장님 인사말씀

② 위원장님 인사말씀

③ 사·구·동 홍보사항 전달

-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 침수대비 행동요령 안내
- 수원새빛돌봄 시범사업 추진
-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2차 모집 안내
- 무더위쉼터(경로당) 운영 안내
-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 새빛돌보미 모집 안내
-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홍보

④ 복지관련 안건 보고

- 동 특화사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중장년 1인가구 밀반찬)’
진행 결과 보고
-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 논의
- 파장동 6월 성금 모금액 및 지출내역 보고
- 「가빈헤어」미용봉사 추진 결과 보고

3. 홍보사항

1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구형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신형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신청대상 2006.11.1. 이전 발급 또는 자연 마모(사진 및 글씨 등)

신청방법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유의사항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해야 무료 재발급 가능

이제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 시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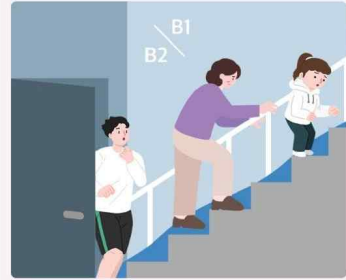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차량 이용자

차량침수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지하차도 진입 금지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세월교(잠수교) 횡단 금지



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공동주택 등 관리자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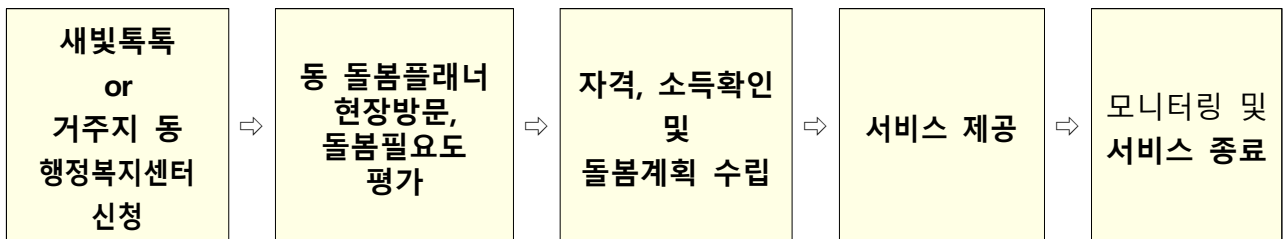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3

수원새빛돌봄 시범사업 추진

- 사업시행 : 2023년 7월 1일 ~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시범동에 한해 서비스 제공)
 - * 시범동(8개동) : (장안) 파장, 조원1 / (권선) 세류2, 세류3, 서둔동 / (팔달) 화서1, 우만1 / (영통) 매탄4
- 지원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돌봄 포인트 지원, * 중위기준소득 75% 초과 가구 본인부담 이용 가능
- 이용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 서비스 절차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지원대상
 - 만 18 ~ 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 모집인원 : 11,000명(2차)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비용(복지포인트) 지원(연 120만원)
- 문 의 처 : 1577-0014

5

무더위쉼터(경로당)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3. 6월 ~ 9월(폭염 대책기간)
 - ※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함
- 쉼터의 적정 실내온도 : 26~28℃
-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폭염에 취약한 사람’ 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 파장동 무더위쉼터(경로당) 현황 : 13개소

연번	쉼터명칭	주 소	비 고
1	파장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1(파장동)	
2	노송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73번길 11(파장동)	
3	현대(아)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5(파장동)	
4	일림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04번길 20 (파장동)	
5	화남2차(아)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33 (파장동)	
6	파송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22번길 30 (파장동)	
7	삼익(아)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02 (파장동)	
8	이목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98번길 13 (이목동)	
9	이화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78번길 55(이목동)	
10	세일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42 (파장동)	
11	장안힐스테이트(아)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20(이목동, 장안힐스테이트)	
12	북수원아이파크(아)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5(파장동, 북수원아이파크)	
13	STX칸(아)경로당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95 (이목동, STX칸 아파트)	

6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정내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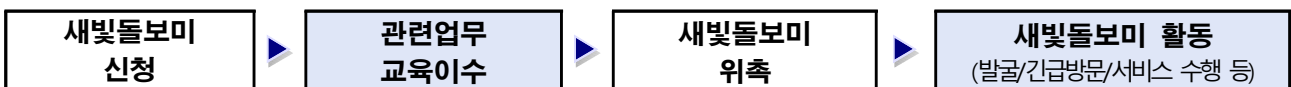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천원	1,588	2,592	3,326	4,050

- 일반재산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등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새빛돌보미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연중 지속 (집중 신청기간 : '23. 6. 30. ~ 7. 31.)
- 모집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기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
- 역할 : 위기가구·자원 발굴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모집인원 : 30명(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함.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 가능하며 2024.10.25.까지임.)
- 운영절차



- 문의처 : 건강복지팀(☎228-5764)

수원지역 특수고용직 노동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3. 6.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종합건강검진비 **100,000원** 지원

(건강검진 혜택가 30만 원 중 10만 원 지원 / 지원금 외 비용은 자부담)

지원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소속)주소지가 수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2022년 소득이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 배달·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돌봄노동자, 프리랜서 등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 8,654,180원)

제출서류

신청서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
직장주소가 나와있는 증명서(배달,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 활동지역 증명 가능한 서류 등)

※ 제출처 :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센터(방문접수)

검진 병원

다인병원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159, 연무동) *자세한 검진 항목은 별지 참고 바랍니다.

주의 사항

- 본 사업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에 서류 제출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다인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검진 후 신청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지원 대상임이 확인된 235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 ※ 소득 기준 미해당자는 병원으로 직접 예약 바라며, 예약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특수고용직 노동자"임을 말씀해 주셔야 혜택가(30만 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안내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T.031-268-1917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센터** T.0507-1361-6131

4. 복지관련 안건 보고

① 동 특화사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선물 지원(중장년 1인가구 밀반찬)’ 진행 결과 보고

- 추진기간 : 2023. 6월 ~ 7월
- 대 상 : 관내 저소득 중장년 1인 20가구
- 주 관 : 파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집행예산 : 600,000원
- 추진내용 : 사례관리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중장년 1인가구에게 밀반찬(햇반, 카레, 국 등)을 지원

②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 논의

☞ 주민제안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안건 제시

③ 파장동 6월 성금 모금액 및 지출내역 보고

- 6월 입금 : 2,850,000원
- 6월 지출 : 750,000원

연번	일 자	입 금 내 역	입금액(원)	비고
총계			2,850,000	
1	2023.6. 5.	이○○	100,000	
2	2023.6. 7.	SFA(수성고사업자모임)	100,000	
3	2023.6.12.	최○○	250,000	
4	2023.6.12.	청해유통	100,000	
5	2023.6.12.	익명(파장동)	200,000	71우정회
6	2023.6.26.	한사랑 길 봉사단	100,000	
7	2023.6.23.	익명기부	2,000,000	

연번	일 자	지 출 내 역	지출액(원)	배분대상
총계			750,000	
1	2023.6.12.	최○○	200,000	71우정희
2	2023.6.12.	추○○	100,000	한사랑 길 봉사단
3	2023.6.12.	박○○	100,000	청해유통
4	2023.6.12.	하○○	125,000	최○○
5	2023.6.12.	임○○	125,000	최○○
6	2023.6.12.	천○○	100,000	SFA

4 「가빈헤어」미용봉사 추진 결과 보고

- 일 시 : 2023. 6. 27.(화) 14:00 ~ 18:00
- 장 소 : 가빈헤어
- 대 상 :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8명
- 추진내용 : 과장동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활동
※ 헤어커트만 가능, 10명내외

《2023. 6월 2차》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 경조사비 **청렴^한 수원**

관련 근거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 음식물 : 3만원 / 선물 : 5만원 / 경조사비 : 5만원

관련 판례

○ 건설회사 대표A는 00시 공사 계약실적이 있는 직무관련자로 00시 B과장의 장남결혼식에 축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시 C과장은 장남결혼식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600만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D대학의 E교수가 장녀결혼식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강사 등 6명에게 각 20만원의 법정한도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나아가 E교수는 청첩장 배포를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고 일부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하여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등을 통해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조리 신고

-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공익신고** 클릭)
-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